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52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17.

발 의 자: 장경태・김민철・김병주

신현영 · 오영환 · 이성만

이수진 • 이용우 • 이워택

임오경 · 임호선 · 김남국

장철민 · 정청래 · 주철현

최혜영 • 한준호 • 홍성국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74조 제2항제3호, 제11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4조제2항제3호 후단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 제112조제4항 후단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)	제74조(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	3
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	
• 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	
의 선정·계약을 요청하고 감	
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	
예치하여야 한다. 시장・군수	,,
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	
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	
용을 직접 <u>지불</u> 한 후 나머지	<u>지급</u>
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	
여야 한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2조(회계감사) ① ~ ③ (생	제112조(회계감사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	4
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	
요청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등	
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	

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. 시장 ·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 사비용을 직접 <u>지불</u>한 후 나머 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 하여야 한다.

지급